|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인지세관리규정(시범시행)>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77호  인지세관리를 진일보 규범화 하고,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인지세관리규정(시범시행)>을 제정하여,이를 발표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11월29일  인지세관리규정(시범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인지세관리를 진일보 규범화 하고,납세자 편의도모를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이하 “<징수관리법>”이라 약칭)및 그 실시세칙과<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임시조례>(이하 “<조례>”라 약칭)및 그 시행세칙 등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증권거래를 제외한 인지세 세원관리,세금징수,감면세와 퇴세관리 및리스크관리 등 사항에 적용되며, 기타관리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인지세관리에 있어 법에 의한 세금관리 원칙을 고수하여야 하며,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관련 법률법규와 세수정책을 집행하고,세법의 권위성과 엄중성을 굳건히 보호하여,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 세무기관은 <조례>와 관련 법률법규의 요구에 근거하여, 납세서비스를 최적화하고, 납세자세무업무처리부담을 경감시키며, 부처협력을 강화하고, 인지세징수관리품질 및 효율을 제고하며, 당면한 세수징수 및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효한 조치를 취한다.  제2장 세원관리  제5조 납세자는 사실대로 인지세 과세 증빙(이하 “과세 증빙”이라 약칭)등 관련 납세자료를 제공하고 적절히 보존하여야 하며,<인지세 과세 증빙 등기부>(이하 “<등기부>”라 약칭)를통일적으로 설치,등기, 보관한다.또한, 과세 증빙과 관련하여 서면형식으로 산생된 각종 계약,장부 등 문건의 체결과 영수상황을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한다.  <등기부>의 내용에는 과세 증빙 종류,과세 증빙 일련번호,증서에 의한 각방(또는 수령인)명칭,분류(영수)시간,과세 증빙 금액,부수 등이 포함된다.  과세 증빙 보존기한은 <징수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 세무기관은 은행,보험,공상,부동산관리 등 관련부처와의 정기적 정보교환제도를 마련하고,관련정보를 이용하여 인지세세원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제7조 세무기관은 다양한 채널과 방식을 통해 인지세정책을 광범위하게 홍보하고,납세지도를 강화하며,납세자의 납세의식과 세법 준수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3장 세금징수  제8조 납세자가 <조례>에서열거한 과세 증빙과 재정부가 확정 징수한 기타 증빙을 체결하거나, 영수 또는 사용한 경우 즉,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과세 증빙의 성질에 근거하여 각각 <조례>에첨부된 <인지세 세목세율표>에 대응하는 세목,세율에 따라스스로 과세금액을 계산하고,수입인지(이하 “인지세 납입필 증빙”라 약칭)를 구매하여 일시에 부착한다.  제9조 1부 증빙의 과세금액이 5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수납부서,납세완납증명서 중 증빙 일련(一联)을 증빙에 붙이거나 또는 지방 세무기관이 증빙에 납세필을 추가 기입하여 인지세 납입필 증빙의 부착을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 동일 유형의 과세 증빙에 빈번하게 인지세 납입필 증빙을 붙여야 하는 경우, 납세자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기간 내 인지세 통합 신고납세방식의 채택을 결정할 수 있다. 통합 신고납세기한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내 통합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1년 내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인지세를 계산 및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세무기관은 <징수관리법>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자 과세세액을 추계할 수 있다.  제13조세무기관은 업종별로 납세자의 과거 인지세 납세상황, 매출상황,과세계약의 체결상황 등에 대한 통계 및 추산작업을 진행해야 하며,각 업종별 인지세 납세현황 및 세수부담 수준을 평가하여 해당 지역의 업종별 납세증빙추계기준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지세 추계징수를 실행할 경우,납세기한은 1개월이며, 납세액이 비교적 적은 경우, 납세기한을1분기로 할 수 있고,구체적인 사항은 주관세무기관이 확정한다.납세자는 납세기한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국가세무총국이 통일 제정한 납세신고표를 작성하여 추계 징수하는 인화세를 신고 납부한다.  제15조 납세자가 주관세무기관이 추계한 과세세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생산경영상황의 변화로 인해 다시 추계해야 하는 경우,주관세무기관에 관련 증거를 제공하여주관세무기관이 조사 후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 주관세무기관이 인지세를 추계징수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세무사항통지서>를 발송하며,또한 추계징수한 방법과 세금납세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세무기관은 인지세 기초자료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업종별 인지세 납세 현황,납세자별 납세자료 등의 내용이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또한 과학적인 인지세 평가방법 또는 모델을 확정하여 이에 기초하여 적시에 합리적으로 인지세 징수관리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18조 세무기관은 인지세 징수관리의 수요에 근거, 세원통제관리 강화 및 납세자 편의도모의 원칙에 따라 <국가세무총국의 <위탁대리징수관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3년 제24호, 이하 “<위탁대리징수관리방법>”이라 약칭)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은행, 보험,공상,부동산관리 등 유관부처에 위탁하여 대출계약,재산보험계약,권리허가증서,소유권이전문서,건설공정도급계약 등의 인지세를 대리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세무기관과 수탁대리징수인은 <위탁대리징수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을 엄격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제20조 세무기관은 인지세 징수관리 중 부처 협력을 강화하고,관련정보를 공유하며,종합적인 세금관리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제4장 감면세와 퇴세(세금환급)관리  제21조 세무기관은 <조례>와 관련규정에 따라 인지세 감면세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인지세는 감면세 비안(등록)관리를 실행하고, 감면세 비안(등록)자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22.1 납세자 감면세 비안(등록)등기표  22.2 <등기부> 사본  22.3 감면세의 근거가 되는 유관 법률 및 법규에서 정한 기타 자료  제23조 인지세 감면세 비안(등록)관리의 기타사항은 <국가세무총국의 <세수감면관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43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4조 인지세 인지를 다수 과다부착한 경우,퇴세 또는 대체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장 리스크관리  제25조 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의 세수리스크 관리에 대한 총괄 요구사항 및 재산행위 세무리스크 관리업무의 구체적 요구사항에 따라 인지세 리스크 관리업무를 전개하여야 하며,해당 지역에 적합한 인지세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탐색하여 구축해야 한다.또한,현대화 정보기술을 사용하여인지세 관리리스크에 대한 식별,예비경고,모니터링을 진행하고,리스트 대응업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  제26조 세무기관은 파악한 세금관련 정보와 납세자가 신고(보고)한 징수정보 및 감면세정보를 비교대조하여,인지세 리스크 포인트를 분석하고 조사한다.  26.1 납세자가 세목별로 기납부한 인지세의 정보와 그에 대응하는 영업장부,권리 및 허가증서,과세계약에 따른 과세세액을 비교 대조하여 해당 장부,증서,계약과 관련한 인지세의 과소징수 리스크를 예방한다.  26.2 납세자의 매출액과 추계된 과세세액을 비교 대조하여,납세자의 추계징수 인지세 과소납부 리스크를 예방한다.  제27조 세무기관은 세수징수관리시스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3자 정보 등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인지세관리를 부단히 강화하여 완벽히 하고,인지세 관리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제6장 부칙  제28조 각 성,자치구,직할시 세무기관은 본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9조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 《印花税管理规程（试行）》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77号  为进一步规范印花税管理，便利纳税人，国家税务总局制定了《印花税管理规程（试行）》，现予发布，自2017年1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6年11月29日  印花税管理规程（试行）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进一步规范印花税管理，便利纳税人，根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以下简称《征管法》）及其实施细则、《中华人民共和国印花税暂行条例》(以下简称《条例》)及其施行细则等相关法律法规，制定本规程。  第二条 本规程适用于除证券交易外的印花税税源管理、税款征收、减免税和退税管理、风险管理等事项，其他管理事项按照有关规定执行。  第三条 印花税管理应当坚持依法治税原则，按照法定权限与程序，严格执行相关法律法规和税收政策，坚决维护税法的权威性和严肃性，切实保护纳税人合法权益。  第四条 税务机关应当根据《条例》和相关法律法规要求，优化纳税服务，减轻纳税人办税负担，加强部门协作，提高印花税征管质效，实现信息管税。  第二章 税源管理  第五条 纳税人应当如实提供、妥善保存印花税应纳税凭证（以下简称“应纳税凭证”）等有关纳税资料，统一设置、登记和保管《印花税应纳税凭证登记簿》（以下简称《登记簿》），及时、准确、完整记录应纳税凭证的书立、领受情况。  《登记簿》的内容包括：应纳税凭证种类、应纳税凭证编号、凭证书立各方（或领受人）名称、书立（领受）时间、应纳税凭证金额、件数等。  应纳税凭证保存期限按照《征管法》的有关规定执行。  第六条 税务机关可与银行、保险、工商、房地产管理等有关部门建立定期信息交换制度，利用相关信息加强印花税税源管理。  第七条 税务机关应当通过多种渠道和方式广泛宣传印花税政策，强化纳税辅导，提高纳税人的纳税意识和税法遵从度。  第三章 税款征收  第八条 纳税人书立、领受或者使用《条例》列举的应纳税凭证和经财政部确定征税的其他凭证时，即发生纳税义务，应当根据应纳税凭证的性质，分别按《条例》所附《印花税税目税率表》对应的税目、税率，自行计算应纳税额，购买并一次贴足印花税票(以下简称“贴花”)。  第九条 一份凭证应纳税额超过500元的，纳税人可以采取将税收缴款书、完税证明其中一联粘贴在凭证上或者由地方税务机关在凭证上加注完税标记代替贴花。  第十条 同一种类应纳税凭证，需频繁贴花的，可由纳税人根据实际情况自行决定是否采用按期汇总申报缴纳印花税的方式。汇总申报缴纳的期限不得超过一个月。  采用按期汇总申报缴纳方式的，一年内不得改变。  第十一条 纳税人应按规定据实计算、缴纳印花税。  第十二条 税务机关可以根据《征管法》及相关规定核定纳税人应纳税额。  第十三条 税务机关应分行业对纳税人历年印花税的纳税情况、主营业务收入情况、应税合同的签订情况等进行统计、测算，评估各行业印花税纳税状况及税负水平，确定本地区不同行业应纳税凭证的核定标准。  第十四条 实行核定征收印花税的，纳税期限为一个月，税额较小的，纳税期限可为一个季度，具体由主管税务机关确定。纳税人应当自纳税期满之日起15日内，填写国家税务总局统一制定的纳税申报表申报缴纳核定征收的印花税。  第十五条 纳税人对主管税务机关核定的应纳税额有异议的，或因生产经营情况发生变化需要重新核定的，可向主管税务机关提供相关证据，主管税务机关核实后进行调整。  第十六条 主管税务机关核定征收印花税，应当向纳税人送达《税务事项通知书》，并注明核定征收的方法和税款缴纳期限。  第十七条 税务机关应当建立印花税基础资料库，内容包括分行业印花税纳税情况、分户纳税资料等，并确定科学的印花税评估方法或模型，据此及时、合理地做好印花税征收管理工作。  第十八条 税务机关根据印花税征收管理的需要，本着既加强源泉控管，又方便纳税人的原则，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委托代征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24号，以下简称《委托代征管理办法》）有关规定，可委托银行、保险、工商、房地产管理等有关部门，代征借款合同、财产保险合同、权利许可证照、产权转移书据、建设工程承包合同等的印花税。  第十九条 税务机关和受托代征人应严格按照《委托代征管理办法》的规定履行各自职责。违反规定的，应当追究相应的法律责任。  第二十条 税务机关在印花税征管中要加强部门协作，实现相关信息共享，构建综合治税机制。  第四章 减免税和退税管理  第二十一条 税务机关应当依照《条例》和相关规定做好印花税的减免税工作。  第二十二条 印花税实行减免税备案管理，减免税备案资料应当包括：  （一）纳税人减免税备案登记表；  （二） 《登记簿》复印件；  （三）减免税依据的相关法律、法规规定的其他资料。  第二十三条 印花税减免税备案管理的其他事项，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税收减免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43号）的有关规定执行。  第二十四条 多贴印花税票的，不得申请退税或者抵用。  第五章 风险管理  第二十五条 税务机关应当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税收风险管理的总体要求以及财产行为税风险管理工作的具体要求开展印花税风险管理工作，探索建立适合本地区的印花税风险管理指标，依托现代化信息技术，对印花税管理的风险点进行识别、预警、监控，做好风险应对工作。  第二十六条 税务机关通过将掌握的涉税信息与纳税人申报（报告）的征收信息、减免税信息进行比对，分析查找印花税风险点。  （一）将纳税人分税目已缴纳印花税的信息与其对应的营业账簿、权利和许可证照、应税合同的应纳税款进行比对，防范少征该类账簿、证照、合同印花税的风险；  （二）将纳税人主营业务收入与其核定的应纳税额进行比对，防范纳税人少缴核定征收印花税的风险。  第二十七条 税务机关要充分利用税收征管系统中已有信息、第三方信息等资源，不断加强和完善印花税管理，提高印花税管理的信息化水平。  第六章 附 则  第二十八条 各省、自治区、直辖市税务机关可根据本规程制定具体实施办法。  第二十九条 本规程自2017年1月1日起施行。 |